

# 예산총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65,304,291	10,959,129
일반회계	343,105,508	10,293,165
특별회계	22,198,783	665,963
기타특별회계	22,198,783	665,963
상수도특별회계	10,566,737	317,002
자활기금특별회계	906,805	27,20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95,721	23,872
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	4,866,229	145,987
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	293,930	8,818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4,769,361	143,081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,176,89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억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- (2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
- (3) 재해대책 및 복구비
- (4)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